
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누구든지 등록하지 아니한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(안 제22조 및 제33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최 기 도)